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클라우드펀딩(리워드형)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적인 비기술 기반 아이템 등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시장성 검증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클라우드펀딩(리워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리워드형 클라우드펀딩)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참여자에게 제품·서비스 등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판매·홍보·시장검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클라우드펀딩

- ☐ 사업목적 : 제주 로컬기업을 하나의 기획전으로 기획·브랜딩하여 기업별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잠재 고객 확보를 지원
- ☐ 모집기간 : 2026년 7월 13일(월) ~ 7월 31일(금)
- ☐ 지원대상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지원규모 : 총 18개사 내외
- ☐ 펀딩플랫폼 : 네이버 해피빈
- ☐ 지원내용
 - 기업별 펀딩 상세페이지 및 SNS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네이버 해피빈 펀딩 등록·오픈·운영 및 홍보 지원
 - 우수 참여기업 공감가게 등록 연계 지원

2

지원유형

□ 리워드형 클라우드펀딩

- 일반 시민으로부터 후원금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리워드) 지급

< 리워드형 클라우드펀딩 세부 조건 >

구 분	세 부 내 용
최소 목표금액	■ 최소 50만원 이상 * 최대 목표금액 기준은 없으나, 펀딩플랫폼사와 협의 진행
펀딩 성공조건	■ 목표금액의 100% 이상 모집 시 성공

3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기획전 브랜딩	■ 제주 로컬기업을 하나의 온라인 기획전으로 구성해 통합 비주얼 및 공동 홍보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 펀딩 개시를 위한 기업 스토리, 신제품 소개 등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펀딩 홍보	■ 내부(재단법인 해피빈) 플랫폼 및 네이버 플랫폼 광고 지원 - (내용) 네이버 PC 판(추천, 리빙, 지식+ 등), 네이버 PC 상생배너 중 적합한 광고 노출지원 ■ 브랜드별 SNS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1:1 코칭 지원	■ 펀딩 성공률 확대방안 지도를 위한 1:1 온라인 코칭 지원 ※참고 : 펀딩 참여기업 대상으로 별도 플랫폼사에서 별도안내 및 지원예정
후속 성장지원	■ (우수기업) - 해피빈-공감가게 입점 (지원규모 : 최대 5개사) ※참고 : 후속지원 기업은 플랫폼사의 평가를 통해 선정 및 지원예정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리워드 제공(상품배송)이 가능한 제품 보유한 소상공인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❶ 휴·폐업자인 경우
- ❷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참고5)
- ❹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❺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❽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이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선정단계에서 신청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탈락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7. 13.(월) ~ 7월 31일(금) 18:00

☐ 신청방법 : 제주크리에이터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구분	제출방법	비고
개인/법인 사업자	시스템 접수	www.jejucreat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법인사업자 기준]	비고 (시스템 등록 안내)
1	[붙임1] 참여신청서	참여신청서 등록
2	[붙임2~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 첨부서류 등록
3	사업/회사소개서(자율양식)	
4	(선택) 통신판매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사전제출서류 > 증빙자료 등록
6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제출 시 유의사항 >

- ※ [붙임 1] 참여신청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 [붙임 2~4]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 5~6번 서류는 사전제출서류에 증빙자료 각 항목에 맞게 등록/수정 파일 업로드
- ※ 모든 파일은 [**서류명+업체명**] 으로 표기
- ※ **서류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요건 검토	서류 평가 및 최종 선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펀딩 오픈 지원 및 개시
서류제출 등 기본 요건검토 실시	사업계획 등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기획전 비주얼 기획/제작, 상세페이지 & SNS 콘텐츠 제작	펀딩 오픈 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개시
~ 26. 8. 7.(금)	~ 26. 8. 12.(수)	26. 8. 13(목) ~ 8. 28(금)	26. 8. 28(금) ~ 9. 27.(일) (평균 30일 이내)

* 세부적인 평가계획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건 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신청제한사항 등 신청 자격요건 검토 실시

- (서류 평가) 요건검토 통과 기업 대상, 각 유형별 평가항목에 맞게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 시 '온라인 대면심사'도 실시 예정

* 평가항목(안) : 리워드 종류 및 구성, 배송 및 CS대응 경험 등 자격요건 확인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획전 비주얼 기획/제작, 브랜드별 스토리 발굴, SNS&상세페이지 기획/제작

- (펀딩 오픈) 상세페이지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 개시 준비 및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실시

○ 평가 항목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상품 경쟁력	온라인 판매 및 광고에 적합한 상품이 있는가	20
브랜드 경쟁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가	20
사업 운영력	온라인 판매 시 수반되는 운영 경험(배송/CS경험)이 있는가	20
사업 운영력	기업의 주요 사업이 잘 정렬되어 있는가	10
사업 운영력	대표자의 전문성이 명확한가	10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10
참여 의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10

※ 상기 평가 항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자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닌, 펀딩 성공을 위한 전문 서비스(교육, 컨설팅 등)를 지원하는 형태임
- 지원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해 주관기관 및 수행대행사의 자료 요청, 교육, 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주관기관	연락처	이메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8	odg77@ccei.kr
해피빈	1588-3820	happybean@navercor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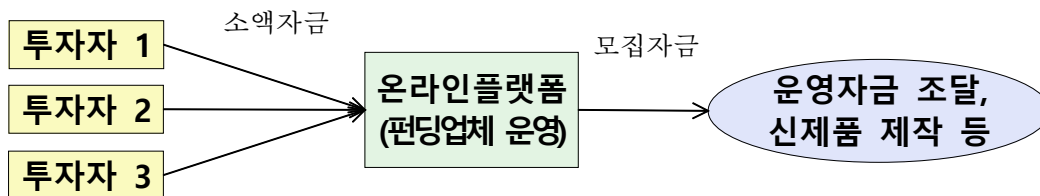
참고1

크라우드펀딩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법인 등이
- ②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 ③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 ④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유 형		운영 자격	자금모집 방식	보상방식	주요 활용
비금융	리워드형	-	후원금, 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 전적 보상(제품/ 서비스 등)	신제품/서비스의 판매 등

□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사: 해피빈

- (주요업무) 가상화폐인 “콩”을 위한 기부로 시작하여, 펀딩 및 공감가게 (소상공인,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가볼까(오프라인체험 및 봉사) 등 공익 서비스 플랫폼
- (플랫폼) <https://happybean.naver.com/>

참고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기간 : '26. 7월 ~ 10월 * 추진일정은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소기업·소상공인) 신청·접수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www.jejucreator.kr	~ '26. 7. 31.
↓		
선정심사	기본요건 확인 등 서류 및 대면심사	접수 후 1주 이내
↓		
최종 선정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최종 선정	평균 1주 이내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기획전 비주얼 기획 및 제작 - 제품사진 촬영, 제품 스토리 작성 등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3주 이내
↓		
펀딩 준비 · 개시	- 펀딩 상세페이지 준비 - 펀딩 홍보 지원	평균 30일 이내
↓		
참여자 모집·홍보	온라인 플랫폼 등 참여자 대상 펀딩 홍보	펀딩 개시 후
↓		
후속 지원	- 후속 성장을 위한 업체 홍보 지원 - 해피빈-공감가게 입점 (지원규모 : 최대 5개사)	펀딩 종료 후

참고3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큐레○○	
■ (사업개요) 전설의 부산 짬짬이! 시즌 한정 대저 토마토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1:1 코칭, 기획전 등 ■ (지원성과) 펀딩성공률 8,051%, 펀딩으로 B2C 신규판로 개척	
애○○	
■ (사업개요)마근사한 식탁의 완성, 겔바속죽 수제 포르게타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1:1 코칭, 기획전 등 ■ (지원성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진행, 2,468% 펀딩률 달성	
그린○○○	
■ (사업개요) 사육곰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오가닉 굿즈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1:1 코칭 등 ■ (지원성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진행, 4,039% 펀딩률 달성	
아따○○	
■ (사업개요) 국내산 딸기로 만든 제로슈거 스파클링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1:1 코칭 등 ■ (지원성과) 첫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진행, 7,070% 펀딩률 달성	
국대○○	
■ (사업개요) 마음을 전하는 가장 맛있는 방법, 국대수박 ■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1:1 코칭, 기획전 등 ■ (지원성과) 4회 펀딩 프로젝트 진행, 1.2억 펀딩금액 누적 달성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업무) 로컬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액셀러레이팅 강화, 벤처 투자·융자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주요연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5. 03.) - (2019. 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 (2020.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1.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2.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2.)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 - (2023.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3.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4.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백년가게·소공인) - (2024.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5.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장수소상공인)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5.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보유 인프라) 창업지원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 공간, 회의공간, 스튜디오 등 보유 ◦ (지원성과) 로컬 등 창업기업 200여개사 이상 지원, 매출 증대, 해외 수출 발생 등 ◦ (프로그램) 역량강화(IR피칭, 투자), 강연, 토크콘서트, 인사이트 트립 관련 종합 컨퍼런스(J-Connect Day 등)

참고5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유탄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표준산업분류	업 종
	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711, 7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이 지정한 업종

참고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